

제244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여수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5년 4 월 8 일

여 수 시 장

김기영



여수시 조례 제2186호

붙임 여수시 여수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부

여수시 여수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 문화진흥 및 시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라 여수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단의 설립)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출자출연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여수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3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각 호의 사업
2.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및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생활문화센터의 운영 및 관리
3. 각종 문화공연 및 축제에 관한 사업
4. 생활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업
5. 지역문화진흥을 위해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과 시설의 운영·관리
6.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4조(기본재산의 조성) 재단의 기본재산은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제5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이사회 의결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6조(운영재원)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재단사업의 수익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7조(정관) 시장은 지방출자출연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정관의 작성이나 정관의 기재사항 변경에 대하여 재단과 협의한 사항을 여수시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8조(임원) ① 재단은 지방출자출연법 제9조 및 재단 정관에 따라 임원을 두고, 이사장은 시장이 되며 재단을 대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원은 16명 이내로 구성하고, 시 문화예술업무 담당 국장은 재단의 당연직 이사가 되며, 시 문화예술업무 담당 과장은 당연직 감사가 된다.

제9조(여수문화재단설립임원추천위원회) ① 시장은 지방출자출연법 제27조 및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에 따라 재단 임원 구성을 위해 여수문화재단 설립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4명과 여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경영전문가

2. 경제 관련 단체의 임원

3.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

4. 공인회계사

5. 지방출연기관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시장이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임원후보자를 심사하며, 대표이사, 비상임이사, 감사 후보를 시장에게 추천한다.

⑥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시 문화예술과장으로 한다.

⑦ 위원회는 추천한 사람이 임원에 임명되는 날까지 존속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 비용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재단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는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는 시의 일반회

계에서 지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출된 경비는 재단의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 준비) ① 시장은 재단이 출범하기 전까지 재단 설립을 위한 정관 등 제 규정 마련, 설립허가·등기 및 직원 채용 등 준비 절차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이 한 재단 설립 준비 행위는 재단이 한 행위로 본다.